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고법 등)

1. 故 백남기 선생,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1-1. 법원의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 영장', '강제 부검'은 무효

'조건부 부검 영장'의 법적 효력은 조건 미이행시 무효로 그 증거력 상실

-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해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해야 함
-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야 함
- 신체훼손은 최소한도로 해야 함
-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함
- 유가족에게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영장은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음

☞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영장에는 각 문장이 “~하여야 함”이라고 돼 있음

1. 故 백남기 선생,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1-2. 검·경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불필요성

故 백남기 선생의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명백

- 뇌는 두개골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출혈이 새기면 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출혈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뇌조직까지 압박해 괴사시킴

- 판독 결과를 보면,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외부 공기가 두개골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두개골과 안와(눈 주변)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

☞ 이는 강한 외부 충격으로 두개골이 깨지고 뇌조직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

1. 故 백남기 선생,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 백씨의 의무기록지에는 백씨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각한 뇌손상으로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고 기록

- ☞ 경막하출혈은 뇌표면의 혈관 등이 외상에 의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해 뇌를 둘러싼 맨 바깥쪽 막(경막)과 사이 공간에 피가 고여 뇌조직을 압박하는 상태
- ☞ 지주막하출혈은 뇌의 중간막(지주막) 밑으로 피가 고이는 상태

1. 故 백남기 선생,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1-2. 검·경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불필요성

故 백남기 선생의 사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명백

일자	내용
2015. 11. 14.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백남기씨, 경찰이 쏜 물대포 맞고 ‘위독’
18.	백남기씨 가족·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강신명 경찰청장·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19.	서울중앙지검, 강신명 경찰청장 등 고발 사건, 형사3부 배당
12. 10.	“물대포 직접 공격은 위헌” ... 민변, 헌법소원 제기
2016. 3. 22.	백남기씨 가족, 국가·경찰 상대 손해소송
9. 25.	백남기씨 결국 사망

1. 故 백남기 선생,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일자	내용
2016. 9. 26.	검찰,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청구
26.	법원,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기각, 진료기록 확보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26.	경찰, 진료기록 확보 위해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27.	검찰, 백남기 선생 부검영장 재청구
	백남기 유족, 법원에 '부검 불필요' 의견서 제출
	법원, 경찰에 부검 필요성 · 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요청
28.	경찰, 백남기 선생 부검 관련 추가자료 법원 제출
	법원, '집행방법 제한' 조건 붙인 백남기 선생 시신 부검영장 발부
29.	경찰, 유족에 '부검 일시 · 장소 통보달라'는 공문 등기우편으로 발송

2. 서울중앙지법, 미르재단 문체부 허가서류 없이 접수 받아

2-1.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정부의 특혜, 보이지 않는 손

미르재단 설립허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초고속 결재

〈미르재단 법인설립허가 내부결재 시간〉

구분	직위	성명	처리결과
기안	주무관	김○○	2015.10.26. 20:07:50
검토	사무관	김○○	2015.10.26. 20:10:57
검토	과장	하○○	2015.10.26. 20:27:46
검토	콘텐츠정책관	최병구	2015.10.27. 08:09:32
전결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2015.10.27. 09:36:25

2. 서울중앙지법, 미르재단 문체부 허가서류 없이 접수 받아

〈미르재단 법인설립허가 통보문서 내부결재 시간〉

구분	직 위	성 명	처리결과
기 안	주무관	김○○	2015.10.27. 10:14:47
검 토	사무관	김○○	2015.10.27. 10:19:06
전 결	과 장	하○○	2015.10.27. 10:20:19

필수서류가 미비되거나 부족한데도 초고속 승인!

2. 서울중앙지법, 미르재단 문체부 허가서류 없이 접수 받아

2-2. 미르재단 설립허가 받기도 전에 법원에 등기 접수

미르재단 법원등기 첨부서류 누락, 중앙지법 접수 받아

[법인설립등기신청시 필요 첨부서류]

- ① 정관 / ② 재산목록 / ③ 인감신고서 / ④ 주민등록정보 / ⑤ 총회의사록
- ⑥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⑦ 취임승낙서 / ⑧ 인감증명서 / ⑨ 위임장
- ⑩ **관청의 허가(인가)서**

10가지 서류 중 문체부 발행 법인설립허가증 미첨부!

2. 서울중앙지법, 미르재단 문체부 허가서류 없이 접수 받아

미르재단 설립허가 문체부와 서울중앙지법 접수시간 15분 차이

민법법인설립등기신청

(법)제 179572호

미르
2015-10-27 10:05 접수(E)
주사 6계

처리인	심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통지

미르재단을 정관으로 작성하고 2015.10.27.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허가 승인 인가시도달연월일 : 2015년10월 27일>

등기의 목적	민법법인 설립등기
등기의 사유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2015. 10. 27.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허가·승인·인가시도달연월일 : 2015년10월27일>
본/지정신청구분	1. 본점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지정신청 <input type="checkbox"/> 3. 본·지정일괄신청 <input type="checkbox"/>
등기할 사항	
명칭	재단법인 미르 (MIR FOUNDATION)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길 21, 3층(논현동)
	본 재단은 문화리본 매체를 통해 3:문화는 사회 정서 증진한 사회 구현과 나아가 국민영족을 국가발전을 목표로 정중문화의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2015-10-27
오전 10시 5분에
승인 완료!

2. 서울중앙지법, 미르재단 문체부 허가서류 없이 접수 받아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지방교육세			
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본점	금 20,000,000 원	0 원	금 24,000,000 원	25,000 원
			금 4,000,000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전자) 15-00-06834751-7		
첨부서면						
1.정관	1통	1.총회의사록	1통			1통
1.재산목록	1통	1.취임승낙서	1통			1통
1.인감신고서	1통	1.인감증명서	1통			1통
1.주민등록정보	1통	1.관청의 허가(인가)서	1통			1통
1.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1.위임장	1통			1통

접수 승인 이후 제출된 서류

3. 중앙지법,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기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영장 기각 관련 사진



3. 중앙지법,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기각!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진



골프 치시라고 했는데
왜 안 치시는가?
내수를 살려야 한다.

2016. 9. 24, 장·차관 워크숍에서

4.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대한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6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인 명단 (대법원 사건 중 판결선고된 사건 1,875건)

[38인 변호사 명단]

강신욱	고현철	김능환	김달식	김상원	김용담	김용준
김주한	김지형	김형선	김황식	박만호	박우동	박일환
박재운	서 성	손지열	송진훈	신성택	신영철	신정철
안대희	안용득	유지담	윤영철	윤일영	윤재식	이강국
이규홍	이돈희	이명희	이용우	이임수	이정우	이흥훈
정기승	차한성	천경송				

4.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연도별 수임 건수 10위 (2011년 1월 ~ 2016년 8월)

(건 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U(53)	U(84)	U(96)	U(53)	U(74)	V(19)
2	Y(35)	W(41)	V(40)	V(41)	V(53)	U(13)
3	Z(32)	Y(34)	X(32)	X(19)	W(31)	X(13)
4	B2(21)	X(33)	W(31)	C2(19)	E(31)	E(11)
5	B(19)	B(27)	A(25)	A(13)	X(30)	W(8)
6	A2(18)	Z(23)	C2(26)	Y(13)	C2(23)	A(8)
7	W(17)	D(20)	Z(24)	W(12)	D2(19)	C2(7)
8	D(17)	A2(19)	B2(19)	C(12)	A(18)	A2(4)
9	D2(16)	F(17)	C(17)	D2(11)	Y(17)	B2(4)
10	C(11)	C(16)	A2(16)	B2(10)	A2(15)	Z(4)

**특정 변호사
10인에게
사건 쏠림!**

4.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재직기간 연고관계 (총 수임건수 175건)

순위	변호사	같이 근무한 적 있는 현 대법관 사건 수임 건수	연고관계 수임비율	전체사건 수임순위
1	C2	76건 중 34건	44.74%	9
2	V	158건 중 56건	35.44%	2
3	E	58건 중 20건	34.48%	15
4	X	127건 중 31건	24.41%	4
5	A	67건 중 16건	23.88%	11

**수임건수 11위 이내 변호사 중 4인의 연고관계 수임비율,
23~44%!**

4.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고교동문 연고관계 (총 수임건수 18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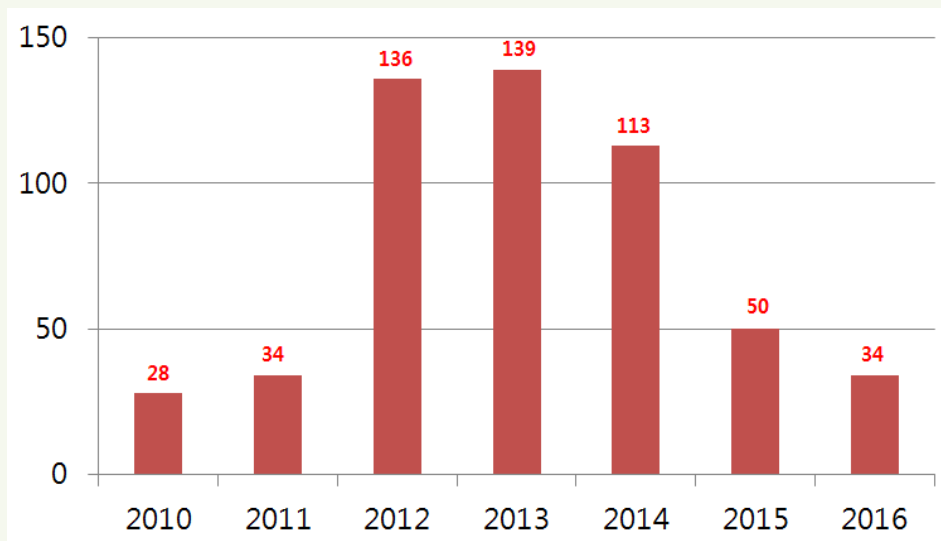
순위	변호사	고교	고교동문인 현 대법관의 사건 수임 건수	연고관계수 임비율	전체사건 수임순위
1	U	ㄱ고교	373건 중 68건	18.23%	1
2	C	ㄴ고교	66건 중 12건	18.18%	13
3	E	ㄷ고교	58건 중 10건	17.24%	15
4	W	ㄹ고교	140건 중 23건	16.43%	3
5	D2	ㅁ고교	76건 중 11건	14.47%	10

**수임건수 10위 이내 변호사 중 3인의
고교동문 연고관계 수임비율, 14~18%!**

5.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43건, 인정은 0건

차량 급발진 사고 현황

최근 6년간 급발진 추정사고 534건 접수 현황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4배 가량 증가!

5.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43건, 인정은 0건

차량 급발진 의혹 규명 시도 및 결과



시기	조사 및 연구내용	결론
1997년 11월 ~1998년 1월	한국소비자원, 자동차변속기 장착 자동차 급발진사고 실태	자동차 요인에 의한 급발진 희박함
1998년 9~10월	소비자원·교통안전공단, 쏘나타 등 차종 4대 전자파장해시험	급발진 현상 나타나지 않음
1999년	국토해양부·교통공단·소비자원, 자동 변속기 자동차 급발진 사고 연구보고	급발진 발생시키는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음
2012년 5월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반, 스포티지R 급발진 조사	운전자 과실
2012년 11월	국토부 조사반, BMW 528i 급발진 조사	기계적 오류를 일으킬 만한 결함 발견 못함
2013년 4월	국토부 조사반, YF쏘나타 등 2종 급발진 조사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 발견되지 않음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6.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6-1.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내용

법정후견(성년, 한정, 특정) 현황

① 성년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727	299	195	1	103
2014년	2,006	1,750	1,152	54	544
2015년	3,010	2,493	1,653	94	746
2016년 6월	1,760	865	558	23	284

6.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② 한정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116	67	43	1	23
2014년	236	233	146	12	75
2015년	283	260	172	13	75
2016년 6월	120	54	34	1	19

③ 특정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50	14	8	-	6
2014년	355	237	218	4	15
2015년	179	292	256	2	34
2016년 6월	62	36	19	1	16

6.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임의후견 현황

연도	접수	처리건수			
		계	인용	기각	기타
2013년	7	1	1	-	-
2014년	8	10	2	4	4
2015년	8	10	6	-	4
2016년 6월	7	5	2	1	2

6.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6-2. 성년후견인제도의 문제점

성년후견 청구인 중 59.3%가 자녀 또는 배우자로, 재산 분쟁이 가장 많음

- 가정법원 김성우 판사가 후견사건 1,000건을 전수조사 한 바에 따르면 성년후견인들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편취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문제는 이를 감독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
-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는 이 제도와 관련하여 법관 2명, 전문조사관 5명, 참여관 및 실무관 각 1명이 업무 담당

6.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등 감독 후 조치도 필요한 상황

- 실제 친족후견인이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법무사에게 300만 원을 지불하는 사례 등이 있음.
- 서류들의 작성과 제출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친족후견인들이 은행문제 등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면 감독절차에 잘 협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6.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성년후견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도 있음

- 성년후견 신청을 낼 친족이 없는 독거치매노인이나 정신지체 고아 등의 경우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음.
- 성년후견인 자격요건으로 지자체장 등이 있으나, 성년후견 청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고법 등)